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고편영화의 등급분류 세분화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14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예고편 영화의 등급분류 세분화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상훈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3. 13.

다. 회 부 일 : 2025. 3.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2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더라도 영화의 편집·삭제를 통해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후 영화관에 상영되는 경우 선정적·폭력적인 장면이 일부 포함되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하게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적·폭력적인 예고편영화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단서).

Ⅲ. 검토의견

1. 예고편 영화의 등급분류 세분화(안 제29조제2항단서)

가. 개정안 요지

-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함(안 제29조제2항단서).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생략)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u>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u>	② ----- ----- ----- ----- ----- -----, <u>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를 말한다)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한다.</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상 영화는 영화 상영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의 5가지 등급 중에서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로 그 등급을 분류하여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그런데 원작인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면서도 영화의 편집과 삭제를 통해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고 이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영화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영화

③ ~ ⑩ (생략)

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경우 선정적·폭력적 장면이 일부 포함되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원작인 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게 하려는 것으로, 선정적·폭력적 장면이 포함된 예고편영화의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세분화할 경우 영화업자가 자신의 영화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고, 예고편영화 상영등급분류가 원작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전에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고편영화를 원작인 영화 등급분류와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검토필요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화업계**도 영화 개봉시점보다 3~6개월, 짧게는 3~4개월 전 사전 홍보용으로 등급분류되는 예고편영화를 본 영화와 동일하게 등급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중소 규모 영화제작사나 배급사의 경우 행정절차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마케팅을 포기할 우려가 있는 등 홍보용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영화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옴.²⁾³⁾

문 의 처
02)6788-5376

2) 특히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특히 해외 영화의 경우 홍보 일정이 지연되고 홍보기간도 단축될 수 있어 이러한 해외 배급사에 대한 불이익이 한·미, 한·EU 자유 무역 협정 위반 소지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민간업계 및 관련 협회 의견은 [참고1] 참조

참고

협회 및 민간업계 등 의견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메가박스 중앙	예고편 영화는 홍보용으로 제작되는 영상물로 그 대상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영화 산업 위축 우려가 있고 관람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회적 통념과 시대적 흐름에 맞게 현재의 등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바, 신중 검토 필요
롯데컬처 웍스	- 예고편영화는 본 영화의 개봉 시점보다 3~6개월 전에 사전 홍보용으로 등급분류되는 바, 본 영화와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2011년 국회 심의에서 예고편영화 상영등급분류 세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로 현행과 같이 개정된 바 있음 - OTT, 게임 등 타 콘텐츠 사업은 규제 완화 추세임. 반면 개정안에 따른 예고편영화 상영등급분류 세분화는 산업 간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되며, 영화업자의 홍보마케팅 홍보 활동 제약 등 과도한 규제인 바, 신중 검토 필요
CGV	- 예고편영화의 목적은 영화 홍보용으로 그 특성상 본 영화보다 3~4주 이전 심의가 완료되며, 예고편과 본편을 동일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마케팅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예고편영화와 본편의 등급 일치를 의무화할 경우 행정절차 지연, 관람타겟층 축소로 인한 마케팅 및 관람객의 영화정보 접근기회 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특히 중소 규모 영화제작사·배급사에게는 행정적 비용이 증가해 마케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전체적으로 영화시장 영화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한국영화관 산업협회	중소배급사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며, 나아가 상영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 검토 필요
한국상영 발전협회	- 예고편영화 상영등급을 세분화할 경우 관람객들의 영화정보 접근성 상실, 영화산업 위축 부작용이 우려됨 - 방송, OTT에 비해 극장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현행법 체계에서도 본편 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예고편영화의 상영 금지 방안 마련 등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개정안의 경우 영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특히 해외 영화의 경우 홍보 일정이 지연되고 홍보기간도 단축될 수 있는 바, 이러한 해외 배급사에 대한 불이익은 한-미, 한-EU 자유 무역 협정 위반 소지도 있음